

##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0년 4월 6일
- 회부일자 : 2010 4월 7일

### 3. 제안이유

- 지난 '99. 5. 27 도로교통법 시행령(제11조의2제3항)의 개정으로 시·군 공무원이 단속한 불법주·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비용 산정기준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.  
※ (개정전) 특별·광역시·도 → (개정후) 특별·광역시 또는 시·군
- 도내 12개 시군의 조례 제정이 완료('04. 1. 15)되어 불필요해진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

### 4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

### 5. 검토의견

- 충청북도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검토한바
- '99. 5. 27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시·군공무원이 단속한 불법주·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비용 산정기준을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도내 12개 시군의 조례 제정이 2004년 1월15일 영동군을 끝으로 완료되어 불필요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
-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